재 캐나다 야구 소프트볼 협회

개정 2024.08.01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 캐나다 야구 소프트볼 협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CANADIAN BASEBALL ASSOCIATION (KCBA)또는
KOREA CANADA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 (KCBSA)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온타리오 주 Ontario Corporate Act 및 캐나다 연방정부 Federal Nonprofit Corporate Act.
비영리 스포츠 단체로서 교민 체육 향상의 발전과 대한민국 체육 분야를 캐나다 한인 동포 교민사회 및
캐나다 국민에게 널리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또는 지회)

본 협회는 본부를 토론토에 두며 각 지회는 밴쿠버, 에드먼턴, 오타와, 몬트리올, 캘거리, 할 리 팍스에 둔다.

제4조 (임원)

1. 본 협회의 임원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포 및 캐나다 국적 시민권자로서 집행부 및 회장단 의결과
회장의 최종 임명으로 정한다.
2. 임원 자격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다 제기되었을 때는 회장단 결의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민 체육 향상을 위해 각종 대회를 주최, 승인, 관장한다.
2. 2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캐나다 복합 문화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3. 교민을 대표하는 각종 대내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다.
4. 지역 한 인간의 친목을 위한 각종 경기를 주최한다.
5. 야구 지도자 및 경기 운영진과 심판진의 양성에 힘쓴다.
6.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2장 (가맹단체 또는 회원)

제1절 회원의 자격 및 단체의 가맹 절차

제6조 본 협회는 집행부 또는 회장단 승인을 거친 각 가맹단체(리그)를 두며 그 단체(리그)는
아마추어야구(하드 볼 및 소프트볼 포함) 글 목적으로 한 단체(리그)로서 조직한다.

제7조 가맹단체는 본 협회에 소속된 메이플 스토리 리프 (MAPLE LEAF LEAGUE/MAPLE LEAF
SOFTBALL LEAGUE)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를 토대로 협회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제8조 협회는 가맹 및 탈퇴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절(회원 또는 가맹단체의 권리)

제9조 본 협회의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및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특전
2. 본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후원

제3절 (회원이나 가맹단체의 의무)

제10조 본 협회의 회원 또는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지닌다.

1. 본 협회의 규약 규정 및 집행부,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해당연도의 회계결산서를 그 단체(리그)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 할 의무
3.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 시 본 협회에 보고 할 의무
4. 본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5. 본 협회는 회원 단체에 위임한 사업, 혹은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회원 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집행부)

제11조 (구성 및 임기)

본 협회 집행부는 회장 1, 부회장 2, 사무총장1(General Manager)을 위시하여 그 아래로, 비서실장 1, 회장단 비서, 감사, 고문, 리그운영팀, 기술/지도팀, 홍보/대외업무팀 등의 실무부서를 두며 각 집행부의 임원진 인선은 회장의 임명으로 정한다. 각 임원진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집행부 의결에 의한 연임이 가능하다.

제12조(임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집행부)을 총괄한다. 또한 협회의 대표 자격으로 공식 행사 참석 시 협회로부터 제반 비용을 지원받는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지시에 따라 본 협회 사무를 수행한다.
3. 사무총장 및 각 집행부 임원은 회장 지시에 따라 본 협회 사무를 수행한다.
4. 비서실장은 본 협회장 업무 관련 보좌하며 대외 업무 및 행정 또는 집행부에 업무 수행 지시를 대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모든 1차 보고를 전달받게 된다.
5. 부회장은 협회의 리그 운영 관리 또는 감독을 하고 대외 업무에 보조를 한다.
6. 리그 커미셔너는 각 종목의 리그를 총괄 하며 관리 감독 총책임을 맡아 GM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는다.

제4장 (특별기구)

제13조 본 협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1. 상벌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대회 위원회
4. 어린이 위원회
5. 각 지부 위원회

제14조 (위원장)

1. 상벌위원회는 집행부의 임원이 당연히 직이며 그 위원장은 Vice-President 부회장이 된다.
2. 심판위원회는 협회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심판원을 그 임원으로 하며 회장의 임명으로 선임된다.
3. 대회 위원회는 집행부의 임원이 직이며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겸임한다.
4. 어린이 위원회 집행부는 추후 공지 예정
5. 각 지부 위원회 집행부는 임원이 직이며 위원장은 추후 공지 예정

제15조 (상벌위원회의 기능)

상벌위원회는 경기 중, 경기인으로서 혹은 경기단체(팀)로 써 협회 목적을 벗어난 행위가 발생했을 시가 처벌의 수위와 내용을 결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나 단체에 포상을 결정한다.

제5장 (감사)

제16조 (임무)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1년으로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감사의 선출과 임기)

감사는 법률/회계 부분의 전문인을 이용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1명을 선출하고 매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그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원으로 한다.
1. 각 리그팀의 해당연도 등록비. (집행부에서 지정)
2. 외부단체 나 후원자 업체 등의 찬조금 및 지원금.
3. 협회의 목적을 초월하지 않는 기타 부대사업.

제19조 (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로 마감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의 결의를 얻어 회장단에 보고한다.

제7장 (회장 선거)

제21조 (선출 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출마 자격: 최소 3년 이상 협회의 임원/회장단으로 활동을 한 자로서 협회의 임원/회장단으로부터 과반수 추천을 받은 자.

2. 회장의 선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회장의 선출은 집행부 및 각 리그(야구·소프트볼)에서 감독의 추천 과반수를 한자로 하면 2인이상일 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 "나"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때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 1차 투표 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모두를,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다”에 따른다.

마.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제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

다. 3. 회장이 자리가 빈 경우에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긴급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4. 회장 역임 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부회장으로 자동 추대한다.

부칙: 본 협회의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